

200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안내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2조4천억원 수준의 200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용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15개) 등에서 신청·접수한다.

금년도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1조2천억원 규모의 구조개선자금 등 총 8개 자금 2조4천원으로 운영되며 지원업종은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사치 및 향락업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이다.

대출조건은 자금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출금리는 크게 4.9% 또는 5.9%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설자금은 8년(3년거치), 기타자금은 5년(2년 거치) 또는 3년(1년거치)의 장기기간으로 지원된다. 다만, 자금별 특성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자금 구조의 개편으로 지식서비스육성자금 등이 구조개선사업자금으로 통합(10종→8종)되고 순수한 운전자금 성격의 일반 경영안정자금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나 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5천억원 규모의 소기업 특별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2월달부터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004년 정책자금 심사평가방식을 기존의 사업별 점수제(Scoring)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업별 등급제(Rating)로 전환하여 재무상태 위주 평가에서 미래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비재무평가 비중을 강화하여 적용키로 하였다.

특히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재무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미래 기업가치 위주의 비재무등급만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결정한다. 기업 신용등급과 별도로 기술·시장성 등급제(5단계)를 신규 도입하여 기술·시장성 등급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진공 신용평가 A등급인 극히 우량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여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지원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정책자금 지원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인터넷 자가진단, 신청·접수, 금융여신거래확인서의 전자화, 전자보증서 발급제도 도입 등으로 정책자금 신청에서 대출시까지 One-Process로 이루어지는 대출체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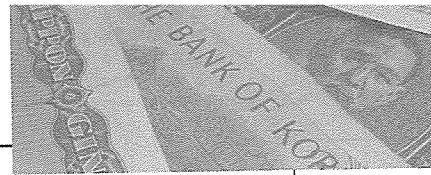
대출금의 상환방식을 획일적 균등상환에서 업종 및 업체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월별, 채증식, 매출액 변동을 고려하는 다양한 상환방식을 상반기중 시범운영 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금별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조개선사업자금(1조2천원, 4.9%)은 설비투자, 중고설비구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 구조조정 및 회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설비투자 지원한도를 확대(20억원→30억원)하고 설비가동 운전자금 지원비율을 확대(시설자금의 30%→40%)하며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을 위하여 구조개선자금내에서 시설자금과 연계되지 않는 운전자금을 지원(대출금리 5.9%)한다.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자금(750억원, 4.9%)은 중기청 시행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나 3년이내의 특허권 또는 이전기술에 대해 제품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자금으로 그간 중진공이 순수한 신용대출로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한 보증서 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개발된 기술이나 특허권의 사업화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및 신규 대출금의 금리를 5.75%에서 4.9%로 인하조치 하였다.

수출금융자금(650억원, 5.1%)은 수출계약(L/C, D/A, D/P, 구매확인서 등)후 선적할 때까지 소요되는



● 정책자금(융자) 규모 및 지원조건

사 업 명	2004예산 (억원)	대출금리 (%)	대출한도 (억원)	대출기간(거치기간)	
				시 설	운 전
구조개선사업자금	12,000				
- 구조개선		4.9	30	8년(3년)	3년(1년)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		5.9	10	8년(3년)	3년(1년)
- 특별경영안정		7.9	10		3년(1년)
중소·벤처창업자금	3,000	5.9	10	8년(3년)	5년(2년)
소상공인창업자금	2,500	5.9	0.5		5년(1년)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	750	4.9	5		5년(2년)
수출금융지원자금	650	5.1	15		180일
협동화사업자금	1,800	4.9	40/20/5	10년(5년)	5년(2년)
입지지원사업	200	5.9	-	8년(3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2,800	* 세부방안 별도 수립·공지			
총 계	23,700				

원부자재 구입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별 수출 계약(L/C, D/A, D/P, 구매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는 자금지원에서 나아가 외상거래방식의 수출실적도 고려하여 한도를 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운용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창업자금(3,000억원, 5.9%)의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우선, 중진공의 직접대출자금(약 1,500억원)에 한하여 개별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종합 평가하여 연도별 추가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성장단계별 지원체제를 마련하였으며 지원금액 산정시에도 과거 매출액이 아닌 창업비, 기술개발비 및 사업화비 위주로 사정하되 사업화비지원을 확대(연 소요액의 1/3→1/2)하여 창업자금 지원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도 중소기업청소관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계획

1. 공통사항

○ 지원기준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

○ 지원제한

- 업종별 지원제한 부채비율(www.sbc.or.kr의 자금 지원안내 참조)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신청시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3년 미만,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 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 특별경영 안정사업 지원대상인 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소득 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미만의 간편장부대상사업자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등록공장(협동화사업은 예외)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A등급 이상인 우량 중소기업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특별경영안정사업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제외)

- 자금 대출 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

○ 지원한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융자사업 중 창업 및 구조고도화 자금을 합산하여 잔액기준으로 50억원(또는 매출액의 125%)

※구조개선사업(시설),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시설), 중소·벤처창업 자금의 경우는 잔액기준 한도만 적용

○지원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신청·접수하여 보증서부 또는 순수 신용대출

-특별경영안정사업,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 등

※중소·벤처창업자금의 보증서부 대출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에서 직접 신청·접수, 소액보증에 한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도 직접 신청·접수가능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접수하여 자금지원 결정 후 은행에서 담보부, 보증기관의 보증서부, 순수 신용대출

-구조개선사업, 협동화사업 등

○신청·접수기간

-2004년 1월 12일~자금소진시까지

※소상공인창업및경영개선자금은 <1. 공통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접수·추천

2. 사업별 자금지원내용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시설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체질을 강화

○지원규모 : 12,000억원

○지원대상

-구조개선사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지원제외업종 : 사채향락, 건설, 소매업 등 (www.sbc.or.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

• 다만, 지원제외업종 업체가 지원대상업종으로

사업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직무기피요인해소를 위한 시설투자기업 우대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지식기반서비스업(전업을 30%이상)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사업 : 구조개선사업 지원대상 중 최종부도 발생기업,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 등의 신용불량기업, 화의·법정관리 진행중인 기업, 자본잠식기업 등

○지원조건

가. 구조개선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대출금리 : 4.9%,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은 5.4%(변동금리)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은 5.9%(신용6.4%)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전자금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대출한도

• 구조개선사업 : 업체당 연간 총 3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업체당 연간 총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지원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청·접수·지원결정 후 담보부(부동산, 신용보증서등) 또는 순수 신용 나. 특별경영안정사업

-대출금리 : 7.9%(변동금리)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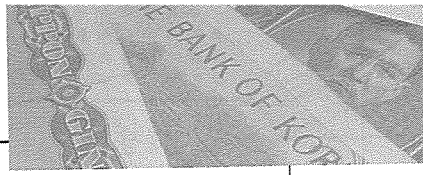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지원방법

-신용 및 신용보증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대출(기업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출가능)

○신청·접수기간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2 중소기업·벤처창업자금

-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
- 지원규모 : 3,000억원
-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중소기업법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지원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
- 지원범위
 - 생산·연구시설, S/W, 중고시설, 사업장확보자금, 건설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등
 - 연구개발비용,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5.9%(변동금리)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 지원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청·접수를 통해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부 및 순수신용 직접 또는 대리대출실시(부동산 등 담보부대출 포함)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담보부, 순수신용)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기술평가보증서부)
 - 지역신용보증재단(소액 보증서부)

3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사업목적 서비스산업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 지원규모 : 2,50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제외 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지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5.9%(변동금리)
 - 대출한도 : 5천만원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취급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조흥, 한미,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 농협
 - 지원방법
 -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 등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대출
- 신청·접수기관
 -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www.sbdc.or.kr)

4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 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지원규모: 750억원

○지원대상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청 선정 Inno-Biz 업체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청 시행 기술개발 사업 성공기업과 Inno-Biz업체는 우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평가 확정 등록이 3년 이내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 중소기업

※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기술조사 결과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받은 특허 출원중인 기술 포함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

○지원범위

-개발기술의 제품양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설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지원조건

-대출금리: 연 4.9%(변동금리)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업체당 연간 5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지원방법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청·접수를 통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부 및 순수신용 직접대출 실시

○신청·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5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

○사업목적: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안정적 경제 발전 도모

○지원규모: 650억원

○지원대상

-수출계약 중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화사업 참여업체

우대지원

○지원범위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15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비용 지원(수출계약액의 90% 이내)

-실적기준 포괄금융이용업체는 15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장기준 포괄금융과 병행지원

○지원조건

-대출금리: 5.1%(시중은행 무역금융 금리에 연동)
대출기간: 180일 이내

• 실적기준 포괄금융: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어음 매입 시 정산

○대출방식

-순수신용 또는 순수신용과 수출보험공사의 선적전 수출금융보증을 연계하는 부분보증(3:7)으로 지원

-실적기준 포괄금융은 만기일에 일시상환하고 신용장기준 포괄금융은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어음 매입 시 정산

○신청·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6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

○사업목적: 다수 중소기업이 입지문제 해결 및 생산성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생산시설, 공해방지시설, 창고 및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등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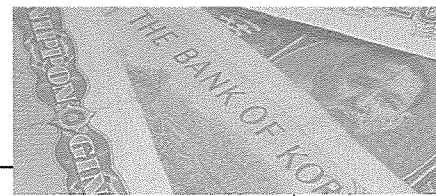
○지원규모: 1,800억원

○지원대상

-아래 지원제한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

※지원제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숙박및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미용·욕탕및유사서비스업 등 기타 서비스업)

※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24조에 의한 공동복지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지원 우대

○ 지원범위

- 시설자금 : 건물·부지매입비, 임차보증금, 건축공사
 - 사맞기계시설설치비(추진주체 50억원 이내,

참가업체 40억원 이내)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4.9%(변동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거치기간 5년 포함)

• 운전자금 및 협업화자금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신청·접수기간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정책자금(응자) 신청·접수기관 연락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전화	지역본부	전화	지역본부	전화
서울	02) 769-6601/8	대전충남	042) 866-0114	울산	052) 277-3283
부산	051) 630-7430/5	충남출장소	041) 531-7492/4	강원	033) 256-9611/3
대구경북	053) 601-5281/4	경기	031) 259-7920/9	원주출장소	033) 749-3332
인천	032) 450-0520/4	경기북부	031) 920-6723/6	강릉	033) 646-9967/8
광주전남	062) 600-3017/9	충북	043) 230-6811/3	제주	064) 751-2055/7
전북	063) 210-9911/4	경남	055) 269-5820/5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지역	전화번호	지역	전화번호
서울	02) 789-9297	광주	062) 361-0630
강남	02) 567-6800	대전	042) 483-2993/6
부산	051) 466-4115	경기	031) 215-1560
대구	053) 424-6970	기술평가 사업본부	02) 789-9308
인천	032) 438-9080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지역	전화번호	지역	전화번호
서울	02) 563-0673	경기(수원)	031) 259-7700
부산	051) 831-1183	강원(춘천)	033) 251-1353
대구	053) 554-5300	경남(창원)	055) 263-2262/4
인천	032) 822-2161/5	경북(구미)	054) 474-7100
광주	062) 950-0011	전남(순천)	061) 743-0365
대전	042) 864-1701/6	충남(아산)	041) 541-9833
울산	052) 289-2300	충북(청주)	043) 236-2691

인터넷 이용 안내

- ▶ 중소기업청 www.smba.go.kr
- ▶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 ▶ 기술신용보증기금 www.kibo.co.kr
- ▶ 정책자금안내시스템 www.finainfo.go.kr
- ▶ 소상공인지원센터 www.sbdc.or.kr